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의 신설〉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744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의 신설	3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74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23인

(2) 제 안 일 : 2025. 1. 23.

(3) 회 부 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운영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의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여성만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말함)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생략)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 한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제36조(시설기준) ① ----- -----

현행	개정안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③ (생략)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u>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u>을 하려는 경우 4. (생략) 5.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여성만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말한다)</u>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u>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제3호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접객업</u>----- 4. (현행과 같음) 5. -----

현행	개정안
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 ----- -----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7.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할 수 없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	2. ----- ----- -----

현행	개정안
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u>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u> 을 하려는 경우	----- ----- ----- <u>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u>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3. (생략)	3. (생략)
4.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u>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u> 을 하려는 경우	4. ----- ----- ----- ----- ----- <u>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u>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u>식품접객업</u>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 ----- ----- <u>식품접객업 또는 여성전용 식품접객업</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u>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u>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 3. (생략) ⑤ ~ ⑧ (생략)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② (생략)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u>제36조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u>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들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⑤ (생략)	④ ----- ----- -----<u>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접객업</u>-----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接客업</u>----- ----- ----- ----- -----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여성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식품위생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을 신설하려는 것임.

- 참고로, 개정안은 현행법 제33조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제36조의 시설기준, 제38조의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41조의 식품위생교육, 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기존의 식품접객업과 별도로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¹⁾의 시설기준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여성만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말함)을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741호) 제49조의3²⁾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

1)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741호)

제49조의3(여성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여성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여성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는 ‘여성 관련기관등’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의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³⁾에 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여성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을 신설하고,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741호)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관련기관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2의 여성전용 숙박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의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5. (생략)

호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이용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식품접객업과는 별도로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을 신설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를 보면,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구분⁴⁾되는 등 성별에 따른 업종 구분은 없으며,

특정 성별(性別)이나 연령(年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법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성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미취학 아동 출입제한 식당, 남성전용 단란주점 등의 경우 별도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개정안은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성폭력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운영을 규제하려는 것인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통한 국민 건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⁵⁾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전용 영업을 신설하여 법률에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노키즈존’ 등 현재와 같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영업방식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경기도

- 식품접객업의 영업 방법은 ‘미취학 아동 출입제한’, ‘남성 출입전용’ 등과 같이 영업자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함.

□ 광주광역시

-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의 신설은 사회적으로 젠더갈등 심화를 부추기는 제도로 양성평등권 침해 및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 성별을 배제하는 법 개정보다는 유연한 방식의

5)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 친화적 환경조성 마련이나 영업자가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소비자를 선택하여 영업할 수 있으며, 영업소 내부에서 식품을 섭취하는 행위에 별도로 성별을 구분해야할 사회공익적 필요가 명확하지 않음.

□ 용인시 기흥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은 단속을 위한 불필요한 규정이라 생각됨.

□ 한국외식업중앙회

-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은 ‘영업자의 영업방식’을 개념화한 용어에 불과하여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제화되더라도 고객의 선택 자율권을 침해하고 양성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음.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개정안은 ‘여성전용 공간’을 사회적 안전지대로 만들려고 하나, 불법적 행위 등으로 안전지대에서 퇴폐지대로 전환될 수 있어서 반대함.

문 의 처
02)6788-5493